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www.namwon.go.kr

제2호

2021. 1. 12(수)

기관의 장

제2호

선

람

○ 남원시의회 훈령 제424호 남원시의회 의장・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청 ----- 1

회 람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보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2년 1월 12일

남원시의회 훈령 제 424 호

남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

남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2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"를 "1일전 18시까지 사무국에"로 한다. 같은 조 단서조항에 "2일전"를 "1일전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시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후보자 등록) ① 의장단선	제7조(후보자 등록) ①
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	
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	
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의회사	<u>1일전 18시까지 사무국에</u>
<u>무국에</u> 등록해야 한다. 다만 <u>2</u>	<u>1일</u>
<u>일전</u> 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	<u>전</u> 이
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.	··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